제 2 8 7 회 거창군의회 제 1 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 6. 23.)

2024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슝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 영 미]

목 차

I . 검토경과 ····································
Ⅱ. 제출근거 ····································
Ⅲ. 세입·세출예산 결산 총괄 ···································
1. 결산총괄1
2. 세입결산 2
3. 세출결산 2
4. 세출·세입처리상황 ······ 2
5. 일반회계 세입결산3
6. 일반회계 세출결산 3
7.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6
8.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 ·······7
9. 계속비 결산9
10. 예비비 지출11
11. 다음연도 이월사업12
Ⅳ. 기금결산 ····································
V. 채권액결산 ····································
Ⅵ. 채무액결산16
Ⅷ. 보조금결산 ····································
WI. 기타의견 ····································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 검토경과

○ 제출일자 : 2025. 5. 30.

○ 제 출 자 : 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25. 5. 30.

○ 의안번호 :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71호)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72호)

Ⅱ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50조
-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Ⅲ 세입·세출예산 결산 총괄

1. 결산총괄(결산서 p25)

(단위:백만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잉여금 (이월액)
합계	990,576	987,882	789,547	198,335
일반회계	924,504	918,754	740,498	178,256
특별회계	66,072	69,128	49,049	20,079

2. 세입결산(결산서 p31)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기기기무제	미스니에	비율(%)		
	Ī	(A)	(B)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C/A	C/B
계		990,576	993,052	987,882	414	4,756	99.7	99.5
일반회	계	924,504	923,569	918,754	414	4,401	99.4	99.5
공기 약 특별회		48,273	51,401	51,112	0	289	105.9	99.4
기타 특별회		17,799	18,082	18,016	0	66	101.2	99.6

3. 세출결산(결산서 p35)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중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 월 액 (E)	보조금 반납액 (F)	집행잔액 G=C-D-E-F
계	819,598	170,978	990,576	789,547	138,525	5,732	56,772
일반회계	765,410	159,094	924,504	740,498	126,595	5,716	51,695
공기업 특별회계	39,389	8,884	48,273	36,706	8,433	0	3,134
기타 특별회계	14,799	3,000	17,799	12,343	3,497	16	1,943

4. 세입·세출 처리상황(결산서 p38)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현핵	세 입 결산액 (A)	세 출 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⑦=(A−B)	이월액 U	보조금 반납금 때	교부 차액 ^ආ	현년도 채무상환 때	순세계 잉여금 빠= Ø- - ®-®
계	990,576	987,882	789,547	198,335	137,680	5,732	235	0	54,688
일반회계	924,504	918,754	740,498	178,256	125,750	5,716	△272	0	47,062
특별회계	66,072	69,128	49,049	20,079	11,930	16	507	0	7,626

5. 일반회계 세입결산(결산서 p44)

(단위 : 백만원)

과	구분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A-B-C)
	계	924,504	923,569	918,754	414	4,401
지	방 세 수 입	40,397	42,502	40,627	140	1,735
세	외 수 입	27,481	33,852	30,964	274	2,614
지	방 교 부 세	322,319	321,626	321,626	0	0
조	정교부금등	30,966	30,768	30,768	0	0
보	조 금	242,158	234,860	234,860	0	0
보및	전 수 입 등 내 부 거 래	261,183	259,961	259,909	0	52

6. 일반회계 세출결산(결산서 p81)

○ **총 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계	924,504	740,498	126,595	5,716	51,695
의회운영위원회	1,231	1,038	0	0	193
총 무 위 원 회	473,140	398,352	33,707	2,359	38,722
산업건설위원회	450,133	341,108	92,888	3,357	12,780

○ 부서별 내역(p.92~220)

보조금 반납액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924,504 740,498 126,595 5,716 51,695 의 회 사 무 과 1.231 1,038 0 0 193 소 계 473,140 398,352 33,707 2,359 38,722 기획예산담당관 64,555 46,959 84 0 17,512 전략담당관 32,732 17,784 11,429 9 3,510 행 정 과 80,148 74,463 181 40 5,464 인구교육과 33,452 21,580 10,546 106 1,220 민원소통과 1,847 1,798 0 0 49 무 재 무 과 9,271 9.006 129 () 136 총 위원회 경제기업과 39,734 33,260 753 5,637 84 문화관광과 16,589 13,123 2,911 180 375 복지정책과 0 26,167 23,302 545 2,320 행복나눔과 139,667 130,263 1,671 1.189 6,544 건 보 소 135 보건정책과 11,976 10,103 1,119 619 건강증진과 4,566 0 71 62 4,433 읍 면 0 12,436 12,278 0 158

(단위: 백만원)

	소 계	450,133	341,108	92,888	3,357	12,780		
	안전총괄과	9,680	7,742	1,390	12	536		
	산 림 과	43,547	33,484	7,915	353	1,795		
	환 경 과	38,447	27,371	9,596	744	736		
	건설교통과	99,650	73,269	22,956	528	2,897		
21.01	도시건축과	57,964	37,570	19,369	336	689		
산업 건설 위원회	농업기술센터							
T 전의	농업축산과	28,521	25,804	675	435	1,607		
	농업기술과	64,835	51,532	8,962	881	3,460		
	행복농촌과	43,995	27,849	15,807	5	334		
	수도사업소	34,266	33,856	61	10	339		
	체육시설사업소	27,520	20,929	6,157	53	381		
	거창사건사업소	1,708	1,702	0	0	6		

7.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 입(결산서 p226~297,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

(단위:백만원)

과	목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A)	실 제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C)	미수납액 (D=A-B-C)
		계			66,072	69,483	69,128	0	355
공 기	상	수		도	19,647	19,918	19,780	0	138
업업	하	수		도	28,626	31,483	31,332	0	151
	의 료	급 c	中 フ] 금	1,094	1,105	1,105	0	0
	발전소	주변지역	격지원	사업	30	30	30	0	0
	산업단	<u> </u>	:성/	사 업	5,293	5,306	5,306	0	0
기 타	주 치	나 장	관	리	631	878	812	0	66
4	댐주변	지역	지원	사업	2,360	2,368	2,368	0	0
	수	질	개	선	3,638	3,636	3,636	0	0
	농 업	발 7	선 기	나 금	4,753	4,759	4,759	0	0

○ 세 출(결산서 p226~297,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B)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F=A-B-C-D)
	겨]		66,072	49,049	11,930	16	5,077
공기업	상	수	도	19,647	14,634	3,444		1,569
기 업	하	수	도	28,626	22,072	4,989	0	1,565
	의 료 급	급 여 기	급	1,094	1,069	0	9	16
	발전소주	변지역지원	사업	30	30	0	0	0
	산업단	지조성시) 업	5,293	2,219	3,017	0	57
기 타	주 차	장 관	리	631	303	0	0	328
	수 질	개	선	2,360	1,714	480	0	166
	댐주변지	기역지원시	·업	3,638	3,609	0	7	22
	농 업 및	발 전 자	급	4,753	3,399	0	0	1,354

- 8.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결산서 p301)
- □ 이 용 : 해당사항 없음(결산서 p302)
- □ 전 용(일반회계) 결산서 p303

(단위: 백만원)

그 H	તો ઢો લો	전 용	금 액	비고
구 분	분 예산액 -	감 액	증 액	
12건	2,389	156	156	

□ 이 체 : 해당사항 없음(결산서 p305)

- □ 전 용(일반회계)
 - <u>예산 전용</u>은 총 <u>12건이며 예산액 2,389백만원 중 156백만</u> 원을 전용하였음
 - 예산 집행은 당초 예산 편성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만 여건 변화, 사업의 일부변경 등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경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에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산 전용은 당초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사업추진 과정 에서 불가피한 지출 수요를 보충함에 그쳐야 하고.
- <u>예산의 목적 외 사용</u>은 <u>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 불필요</u> <u>한 예산 지출,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양</u>할 것을 결산 검사에서도 권고되었음.
- 12건의 전용 사업 대부분이 사업의 필요성 등을 위해서 적절 하게 전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u>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이나</u>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차후 전 부서에서는 예산의 전용 시 상기 권고 사항을 적극적 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람.

9. 계속비 결산(3권-결산서 부속서류 p129)

(단위 : 백만원)

정 해 연 도 집 행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집행조합계(19건) 71,345 29,255 40,636 1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1,756 1,701 45 다누리복합문화센터조성 1,000 0 1,000 지역활력타운 주거거점 조성 5,917 1,605 4,310 청년창업지원센터 5,750 0 5,750	454 10
예산현액 지줄액 이월액 집행전 합계(19건) 71,345 29,255 40,636 1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1,756 1,701 45 다누리복합문화센터조성 1,000 0 1,000 지역활력타운 주거거점 조성 5,917 1,605 4,310	454 10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1,756 1,701 45 다누리복합문화센터조성 1,000 0 1,000 지역활력타운 주거거점 조성 5,917 1,605 4,310	10
다누리복합문화센터조성 1,000 0 1,000 지역활력타운 주거거점 조성 5,917 1,605 4,310	
지역활력타운 주거거점 조성 5,917 1,605 4,310	0
청년창업지원센터 5,750 0 5,750	2
	0
노인요양시설확충(신축)사업 9,090 7,227 554 1	309
스피드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 2,988 34 2,954	0
빼재 익스트림 레저모험타운 조성사업 2,476 2,469 0	7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잔도길 <i>조</i> 성사업 2,624 136 2,488	0
기초생활인프라(소규모 용수개발) 2,892 1,784 1,108	0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0,822 3,496 7,326	0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4,661 1,260 3,275	126
신활력플러스사업 3,815 1,071 2,744	0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1,499 1,017 482	0
기초생활거점육성(가북면) 3,922 1,181 2,741	0
농촌중심지 활성화시업(농촌협약-거창읍) 1,841 349 1,492	0
기초생활거점조성(농촌협약-마리면) 800 36 764	0
거창읍 동산마을 농촌공간정비사업 4,897 4,746 151	0
기초생활거점조성(농촌협약-주상면) 803 35 768	0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3,792 1,108 2,684	

- 2024년도 <u>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계속비 집행 상황</u>은 총 <u>19건에 29,255백만원</u>이며, 일반회계는 18건에 28,147백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건에 1,108백만원임.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의 규정에 따르면 그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 19건의 계속사업비 이월 내역은 타당함.

10. 예비비 지출(결산서 p309)

(단위: 백만원)

	과	목	지 출	지출액	റിലിവ	집행잔액
조 직	단 위	세부사업	결정액	시팔백	이혈액	십생산백
합	계	3건	642	625	0	17
건설교통과	소규모 지역개빌	호우피해 재난복구	539	523	0	16
농업기술과	고식미 생산	시설 농작물 일조량 부족 피해농가 재난 지원금	77	76	0	1
농업기술과	고식미 생산	이상기후에 따른 농 작물 피해농가 재난 지원금	26	26	0	0

-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의 지출결정액은 총 <u>3건에 642백</u> 만원이며 그 중 625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백만원임.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u>호우 피해 재난복구와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 자연</u> 재난에 따른 것으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다고 검토됨.

11. 다음연도 이월사업(결산서 부속서류 p179)

(단위: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이월액	비 고 (%)
계		267	419,270	138,528	33
	일반회계	81	122,859	41,783	34
명시	댐주변	1	1,360	480	35
이월	상수도	3	8,384	3,335	40
	하수도	6	10,550	4,527	43
	일반회계	137	206,412	47,567	23
사 고	산업단지	1	1,372	333	24
이 월	상수도	2	6,617	108	2
	하수도	3	2,953	461	16
계속비	일반회계	31	54,971	37,245	68
이월	산업단지	2	3,792	2,689	71

※ 지난해 이월사업: 306건, 170,978백만원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해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 회계 연도에 지출을 다 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사업기간 미도래, 보상지연, 설계변경, 행정절차 지연, 기본계획 미확정 등의 사유로 이월됨.
- <u>이월 사유와 이월 금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사례의</u> 경우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이월을 최소화 하기 위한 효율적인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 계속비 지원사업, 특별교부금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의 이행, 보상절차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 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Ⅳ 기금결산(결산서 p336)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당 해	연 도 증	: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기금명	조성액 ⑦	계나=마-라	조 성 액마	사 용 액ঞ	(画=到+頃)
계(9종)	94,532	△17,548	45,528	63,076	76,984
식 품 진 흥 기 금	133	0	48	48	133
중소기업육성기금	5,137	△532	171	703	4,605
사회복지기금	2,523	49	89	40	2,572
재난관리기금	3,484	△195	894	1,089	3,289
아림예술제진흥기금	513	12	16	4	525
옥외광고발전기금	336	19	41	22	355
체 육 진 흥 기 금	1,102	16	36	20	1,11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0,836	△17,292	43,708	61,000	63,544
고 향 사 랑 기 금	468	375	525	150	843

검 토 의 견

○ 2024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u>기금은 9종</u>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은 94,532백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45,528백만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63,076백만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6,984 백만원임.

- 기금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기금결산에 연도말 잔액에 대한 반납, 수납처리 등 사유 발생 시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 내 반납처리하여 차액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음
-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안정화 기금에 편성하여 세입이 부족한 때에 이를 충당하여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군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 <u>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당해연도 사용액이 620억원</u>인데 신규 대형사업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u>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u> <u>부족한 재정 충당</u>으로 보여짐.
 - 기금은 조성보다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은 집행이 미미하므로 향후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함.

V 채권액결산(결산서 P.518~522)

○ 회계별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잔 액
합 계	9,550	3,479	1,930	11,099
일반회계	2,501	113	236	2,378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7,049	3,366	1,694	8,721

[※] 채권액은 원금 + 이자 기준임.

-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9,550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479백만원이 발생하고, 1,930백만원이 소멸하여 1,549백만원이 증가한 2024년도말 현재액은 11,099백만원임.
- 채권 종류별 현황을 보면 <u>보증금채권 133백만원, 융자금 채권</u> 10,897백만원, 기타채권이 59백만원으로 보증금채권은 콘도 회원 권이고, 융자금채권은 공무원 학자대여금, 주택융자이며, 기타채 권은 행정소송 승소금임.
-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채와 마찬가지로 공공목적 달성, 이미 발행된 지방채의 상환,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대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발행되며 세외수입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지방채와 세외수입 비교

구분	채 권	세 외 수 입			
발행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 하여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 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 로부터 회수되는 금원 및 사법적 계약에 의한 금원 등이 해당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임대수 입등 사법적 계약에 의한 수입 지방자치법에 의한 사용료수입, 수수료 등 수입과 공법상 의무이 행을 강제하기 위한 금전적 행정 질서벌(과태료 및 과징금)에 의 해 부과되는 금원 등이 해당			
종류	보증금, 융자금, 미수금, 기타채권	재산임대수입, 매각수입, 사용료 수입, 과태료와 과징금 등			
관계	위와 같은 내용에 근거하여 회수 시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잔액만 채권으로 관리	공유재산매각 수입이나 융자금 등 수입된 금원에 대하여는 세외수 입으로 처리(채권에 의하여 관리 하는 수입 포함)			
관리	특별한 법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관리·회수	개별적으로 규정된 법규정에 의해 관리·징수			
지는	※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매각 및 융자로 인하여 지원된 금원이 회수되기까지는 채권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부과·징수에 의하여 회수될 경우 세외수입으로 처리				

VI 채무액결산(결산서 p313)

○ 해당사항 없음

VⅢ 보조금결산(본예산)(결산서 부속서류 p445)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수 령 액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368,790	361,681 (123,067)	301,628	50,401	9,652
일 반 회 계		365,006	357,897 (123,067)	297,861	50,401	9,635
巨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30	30	30	0	0
특별 회계	의료급여기금	181	181	171	0	10
	수질개선	3,573	3,573	3,566	0	7

^{※ ()}안은 군비 부담액임.

검 토 의 견

- <u>2024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361,681백만원</u>으로 집행액은 301,628 백만원, 이월액 50,401백만원으로 집행잔액은 9,652백만원임.
- <u>보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군비부담액은 123,067백만원으로 총</u> 사업비 대비 34%에 해당됨.

Ⅷ 기타 검토의견

- 결산은 사후적인 관계로 집행된 예산의 내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효과는 없음.
- 결산은 1회계연도 동안 운영된 예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사가 완료되어야 그 운영이 종결되므로 비로소 예산운영 주체에 대한 책임이 정치적, 행정적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결산심사는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집행 및 편성을 위한 지도, 감독,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
- 재정 운용 기본방향은 재정 운용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성과 창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최대 확보,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성 강화,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와 안전 환경 조성으로,
-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신규사업은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하고, 전략적 예산확보와 효율적 재원투입,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군정발전 전략추진, 지역경제 살리는 효율적인 재정회계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음.
- 202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총 세입액은 1,127,942백 만원, 총 세출액은 852,623백만원으로 잉여금은 275,318백만원임. 세입대비 24.40%가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것은 재정 계획과 재원 배분에 다소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것임.
- 일반회계 세입은 918,75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961백만원 (2.3%)이 증가하였으며,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감소된 주된 이유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감소로 보여짐.
- 일반회계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u>지방</u> 교부세 321,626백만원(35%)이고, <u>보조금</u> 234,857백만원 (25.5%), 조정교부금 30,678백만원(3.3%), 지방세는 40,629백만원 (4.4%), 세외수입은 30,963백만원(3.3%)으로

- 우리군 재정은 <u>자체재원(7.7%)보다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u> 등 이전재원(63.9%)의 비율이 8배 가량 높음.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총 세출은 852,62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2,05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기능별로는 농림해 양수산 151,127백만원, 사회복지 164,801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68.735백만원 순이며.
- 전년대비 가장 많이 금액이 증가된 것은 공공행정(41%), 보건 (28%)분야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년대비 34% 감소하였음.
- 평균 집행률은 80.1%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이 63.4%로 집행률이 가장 낮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의 사업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재검토를 해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나머지 예산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특정 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써 전년 도말 조성액 94,532백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45,528백만원을 합산한 140,061백만원이며, 사용액이 63,077백만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6.984백만원임.
- <u>기금결산에 연도말 잔액에 대한 반납, 수납처리 등 사유 발생 시</u>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 내 반납처리하여 차액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음

- 당해년도 조성액은 45,528백만원이고, 사용액은 63,076백만원 으로 <u>기금조성에 비해 사용액이 17,548백만원이 더 많으며,</u> 이는 <u>정부의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감소</u> 되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임.
-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특정 자금을 보유·운용하여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지방세와 세외수입 결손처분이 414백만원으로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평가액 부족, 토지 공매 배분금액 부족 등의 이유로 정리보류하였으나 소멸시효 완성이 203백만원으로 49.01%를 차지함. 제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제납액의 징수권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체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시효로 소멸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 2024년 일반회계 사업에 <u>예산불용액 과다발생분은 사업별</u> 집행계획을 자세히 검토하여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하고, <u>보조사업비</u> 반환금도 지난해에이어 증가 추세여서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특히,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25건 153백만원을 전액 미 집행한 것은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써 향후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 시 정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2024년 예산편성 후 미집행 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비고
계	25건	153,231		153,231	
1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2,500	0	2,500	
2	다문화가족 복지 지원	20,000	0	20,000	
3	다문화기족 자녀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사업	13,000	0	13,000	
4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	11,500	0	11,500	
5	목재수확 점검관리	4,278	0	4,278	
6	소규모 공동 주차장 조성	19,300	0	19,300	
7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 사업	4,000	0	4,000	
8	재활용품 수거자판기 설치사업	6,000	0	6,000	
9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10,000	0	10,000	
10	스마트강소농 활성화 시범	2,000	0	2,000	
11	소 유전체 정보분석 지원	11,340	0	11,340	
12	양봉농가 밀원수 조성사업	17,500	0	17,500	
13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1,600	0	1,600	
14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2,000	0	2,000	
1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신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	900	0	900	
16	거창군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4,573	0	4,573	
17	죽전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00	0	10,000	
18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3,000	0	3,000	
19	범죄예방환경조성 우리동네 안심순찰대 사업	1,000	0	1,000	
20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4,000	0	4,000	
21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사업	480	0	480	
22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900	0	900	
23	대중교통 운행 지원	160	0	160	
24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2,500	0	2,500	
25	임대농기계 및 순회교육	700	0	700	

- 거창군에서 수립한 <u>성과계획서</u>를 검토한 결과 <u>전략목표 24개,</u> 정책사업목표 75개 추진을 위한 212개의 정책(성과)지표를 <u>설정</u>하고 정책지표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추진 하였으나
- <u>대상사업 작성 누락, 특별한 노력 없이 목표 달성이 가능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미흡하</u> 거나 측정 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목표치를 설정한 지표가 확인됨.
- 또한, 시설공사 20억원 이상, 조사연구용역 건당 3억원 이상인 주요사업은 예산을 수반하는 대형 사업이므로, 예산의 성과 계획 서를 작성, 성과보고서와 연동하여 성과 목표를 관리하여야 하나 시설공사 6건은 성과보고서 작성이 누락되었으며,

★ 2024년 주요사업 성과계획서 미작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 '	겁 비	
부 서 명	사 업 명	총사업비	당해연도 사업비	비고
전략담당관	화장시설 건립	23,300	100	
신탁급정원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5,407	2,186	
안전총괄과	고견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8,478	160	
산 림 과	문화관광자원개발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	11,700	(11,700)	치수별추진
도시건축과	상동 도시재생인정사업	6,530	(6,530)	
체위설업소	다목적 체육관 건립	12,000	2,393	

○ 계속비와 이월 사업도 해당연도 내 사업예산으로 성과계획서를 작성, 성과보고서와 연계하여 성과 목표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12건의 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음.

★ 부서별 이월사업 성과계획서 미작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부 서 명	사 업 명	사 업 비	비고
계속비	행복농촌과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326	
	전략담당관	경남별장조성	980	
	므칭 코 카코	남부권 특화 진흥사업(ESG)	20	
명시	문화관광과	남부권 특화 진흥사업(웰니스)	40	
이월	행복나눔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631	
	안전총괄과	고견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111	
	건설교통과	도재정건의사업 추진	50	
	재무과	거창군 청사 증축사업	67	
11-	경제기업과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	362	
사고 인전총괄과	안전총괄과	고견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30	
	산림과	7.9~7.19 호우피해재난복구	429	
	· 신급석	석재산업 환경피해저감사업	399	

○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의지와 노력 등이 반영된 합리적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근 거를 명시하여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 <u>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성과계획서를 변경할 경우, 추가경정예산</u> 편성 시 성과계획서도 동시에 변경하는 절차를 준수하기 바람.
- 성과보고서 검토결과 212개의 성과지표 중 미달성 16개, 초과 달성이 21개로, 목표달성도가 82.6%로 지난해 77.4%보다 5.2% 증가되었음.
- <u>성과목표 관리제도는 3개년에 걸쳐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대로</u> <u>이행했는지 점검하고 환류하는 제도</u>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시에는 사업목적과의 연관성과 결과 중심의 적성성, 목표 수준의 합리성에 역점을 두고,
-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되, 달성이 불가능한 지표를 설정하여 미달하거나 목표를 낮게 잡아 초과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 도록 신중하기 바람.